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544호 2020. 9. 28(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6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49호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안) 공람·공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6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 26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6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2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건지로 63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09.2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9-2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56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63 (석남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57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55 (청라동)	20101111	청리대로 서쪽에 위치	
3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로 14 (금곡동)	20191223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스러운 모양을 이르는 순 우리말에서 착안	
4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1로 35 (금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첫 번째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0-47	인천광역시 서구 가청로77번길 28 (가좌동)	20090922	가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0-48	인천광역시 서구 가청로77번길 26 (가좌동)	20090922	가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69-5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20 (가좌동)	20090706	원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56, 956-57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32-15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2-9	인천광역시 서구 통화로85번길 31 (오류동)	20090922	통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2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9번길 7 (청라동)	2011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9-2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2	인천광역시 서구 예코로 163 (청라동)	인천광역시 서구 예코로 151 (청라동)	기초번호 변경	20101111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에서 착안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5	인천광역시 서구 예코로 181 (청라동)	인천광역시 서구 예코로 167 (청라동)	기초번호 변경	20101111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에서 착안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9-28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77번길 24 (가좌동)	건물 말소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26-22 (석남동)	건물 말소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주)나산건설
3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51번길 15-1 (석남동)	건물 말소	20090922	신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51번길 15 (석남동)	건물 말소	20090922	신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166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9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9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우미건설(주) (대표자 이석준)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9블록
  - 나. 대지면적 : 31,541m<sup>2</sup>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02,900.0027m<sup>2</sup> (지하2층, 지상2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765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269,794,000천원
4. 사업기간 : 2020. 02. 20. ~ 2022. 09. 20.

5. 변경사항

- 가. 형별성능관계내역(단열재 등) 변경
- 나. 세대 내부 위치 변경(팬트리, 주방창)
- 다. 욕실 및 거실 문 변경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449호

##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 공고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원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

정비사업의 명칭	(기정) ◦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 ◦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재건축으로 명칭 변경

###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

#### ■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원	21,488.45	감) 4.00	21,484.45	인고 제2011-206호 (2011.8.16.)
변경	재건축 정비사업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 면적 변경사유 : 등기 착오로 인한 면적 변경을 반영하여 구역경계 조정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m <sup>2</sup> )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1,488.45	감) 4.00	21,484.45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1,415.45	증) 69.00	21,484.45	100.0	등기 착오로 인한 면적변경 반영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3.00	감) 73.00	-	-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 감소

\* 변경사유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77호(2018.7.23.)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자연녹지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반영함

2)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71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대2-35	28,500	1,240 660	편측15	인고 제169호(1990.11.24.)	

\* 변경사유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46호(2018.12.31.)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사항을 반영함

4.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면적(m <sup>2</sup> )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1,488.45	감) 4.00	21,484.45	100.0	등기 착오로 인한 면적변경
획지	소계	19,885.47	감) 744.47	19,141.00	89.1	-
	공동주택	18,947.03	증) 193.97	19,141.00	89.1	-
	근린생활시설	938.44	감) 938.44	-	-	근린생활시설 삭제
정비기반시설	소계	1,602.98	증) 740.47	2,343.45	10.9	-
	도로	1,472.98	증) 90.45	1,563.43	7.3	도로확폭(14~16.5m→14~17m)
	주차장	130.00	감) 130.00	-	-	주차장 조례 개정사항 반영
	공원	-	증) 780.02	780.02	3.6	소공원 1개소 신설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5	30~40 (3.3)	주간선 도로	3,750	대로2-29	동암역	일반 도로	-	건고제54호 (70.2.9.)	
변경	대로	2	35	30~40 (0)	주간선 도로	3,750	대로2-29	동암역	일반 도로	-	건고제54호 (70.2.9.)	버스 정류장 삭제
폐지	중로	2	80	15~17	국지 도로	435 (87)	대로2-35	대로2-32	일반 도로	-	인고제884호 (85.10.12)	실효
신설	중로	2	A	14~17	국지 도로	88 (88)	대로2-35	소로3-A	일반 도로	-	-	구역내 신설
신설	소로	3	A	2~3	특수 도로	72 (72)	중로2-A	가좌동 30-2	보행자 우선 도로	-	-	구역내 신설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92	대로2-35	중로2-79	일반 도로	-	인고제884호 (85.10.12)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292 (2)	대로2-35	중로2-79	일반 도로	-	인고제884호 (85.10.12)	도로 가각부 포함

\*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 변경사유 : 구역 내 교통여건 개선(4개차선 확보 등)을 위해 완화차선을 추가확보하여 도로폭원 확폭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주차장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대	130.0	감) 130.0	-	인고 제1195호 (11.8.16)	

\* 변경사유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2 개정사 항반영

## 3) 공원

##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소공원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대	-	증) 783.02	783.02		-

\* 변경사유 : 해당 위치가 주민쉼터로 일부 활용되고 있는 상황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소공원 신설

6.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정

결정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가좌진주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1,488.45	획지㉠-1	18,947.03	서구 가좌동 30-2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18 이하	250 (260) 이하	300 이하	113 이하	-																		
			획지㉠-2	938.44		근린 생활시설	50 이하 20 이하	250 이하 80 이하	-	자연 녹지지역																			
			획지㉠-3	130.00		노외 주차장	-	-	-	-																			
			허용용도	획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li> <li>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li> </ul>																								
				획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 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li> </ul>																								
				획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li> </ul>																								
			불허용도	획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획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학교보건법」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li> </ul>																								
				획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주차장법 제2조 1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전용 건축물</li> </ul>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 비율의 50% 이상)</li> </ul>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사항 없음</li> </ul>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 : 300%</li> <li>-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30% 확보</li> <li>-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경우에 한함)</li> </ul>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위 치</th> <th>계획내용</th> <th>계 획 목 표</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건축 한계선</td> <td>획지㉠-1</td> <td>폭 3m</td> <td>•대로2-35호선변, 중로2-80호선변, 소로3-1호선변 : 3m 지정</td> <td></td> </tr> <tr> <td>획지㉠-2</td> <td>폭 3m</td> <td>•중로2-80호선변 : 3m 지정</td> <td></td> </tr> <tr> <td>획지㉠-3</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	폭 3m	•대로2-35호선변, 중로2-80호선변, 소로3-1호선변 : 3m 지정		획지㉠-2	폭 3m	•중로2-80호선변 : 3m 지정		획지㉠-3	-	-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	폭 3m	•대로2-35호선변, 중로2-80호선변, 소로3-1호선변 : 3m 지정																										
	획지㉠-2	폭 3m	•중로2-80호선변 : 3m 지정																										
	획지㉠-3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적률 인센티브</li> <li>-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6% + 지하주차장 계획 10% + 탑상형아파트 5% = 251.0%</li> <li>- 계획용적률 : 250%(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li> <l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 등)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300%</li> </ul>																										

■ 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												
변경	가좌진주 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1,484.45	획지Ⅰ-1	19,141	서구 가좌동 30-2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23 이하	275 이하	300 이하	85 이하	-										
			허용용도	획지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li> <li>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li> </ul>																
			불허용도	획지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 비율의 50% 이상)</li> </ul>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비율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을 위하여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30%를 소형(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음</li> </ul>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 :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30% 확보</li> <li>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건설(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경우에 한함)</li> </ul> </li> <li>「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하기 위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30%를 소형(임대)주택으로 계획</li> </ul>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위 치</th> <th>계획내용</th> <th>계 획 목 표</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건축한계선</td> <td>획지Ⅰ-1</td> <td>폭 3m</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로2-35호선변, 중로2-80호선변, 소로3-1호선변 : 3m 지정</li> <li>인접대지경계선 : 3m 지정</li> </ul> </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고	건축한계선	획지Ⅰ-1	폭 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로2-35호선변, 중로2-80호선변, 소로3-1호선변 : 3m 지정</li> <li>인접대지경계선 : 3m 지정</li> </ul>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고																	
건축한계선	획지Ⅰ-1	폭 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로2-35호선변, 중로2-80호선변, 소로3-1호선변 : 3m 지정</li> <li>인접대지경계선 : 3m 지정</li> </ul>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적률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화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3% + 지역업체참여 10% = 243%</li> <li>상한용적률 : 완화용적률 243% + 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하여 부지제공 42.2% = 285.2%</li> <li>정비계획용적률 : 275.0% 이하</li> <li>법적상한용적률 : 300% 이하</li> </ul> </li> <l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규정에 의한 소형(임대)주택 건설시</li> </ul>																		

##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

구 분	내 용
기 정	•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변 경	• 구역지정 (변경)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변경사유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18호(2014년 5월 26일) 정비계획 변경고시 이후 예정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

## 8.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 1)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구 분	내 용
기 정	•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여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변 경	•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여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 법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함

##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 공유토지(가좌동 30-2번지)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간 협의 등을 거친 후 사업추진

## 9.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9. 28.~ 2020. 10. 27.까지

## 10. 공람 장소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032-560-4592)

## 11. 관련도면 및 조서 : 게재생략(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비치)

## 12. 첨부서 : 정비구역 결정(안)도,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안)도,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안)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안)도, 토지이용계획(안)도, 정비계획결정(안)도.

\*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끝.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14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자원봉사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구 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인구규모 50만 이상에 따라 상근직원 수(10명→12명) 조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 정비
  - 1국 2팀 체계 정비 (안 제3조 및 별표 1)
  - 팀의 임무 및 팀의 구성인원 삭제 (안 제3조, 제3조의2 및 별표 1)
- 직원의 승진 임용 시 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에서 ‘인사위원회’ 로 변경(안 제18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

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총무과 전화 560-4514, 팩스 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1. 제안이유

- 자원봉사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구 자원봉사센터 조직 체계 정비 및 팀명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2. 주요내용

- 가. 인구규모 50만 이상에 따라 상근직원 수(10명→12명) 조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조직 체계 정비
- 1국 2팀 체계 정비 (안 제3조 및 별표 1)
  - 팀의 임무 및 팀의 구성인원 삭제 (안 제3조, 제3조의2 및 별표 1)
-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조직구성안 반영
- 나. 현재 팀명에 따라 ‘총무기획’을 ‘기획조정’으로, ‘교육홍보’를 ‘교육운영’으로 정비(안 별표 1 및 제10조)
- 다. 직원의 승진 임용 시 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로 변경 (안 제18조의2)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띄어쓰기 등)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개정안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팀을 두며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를 “1국 2팀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 중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를 “조직체계”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홍보팀장”을 “교육운영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다음연도”를 각각 “다음 연도”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별표 2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8조의2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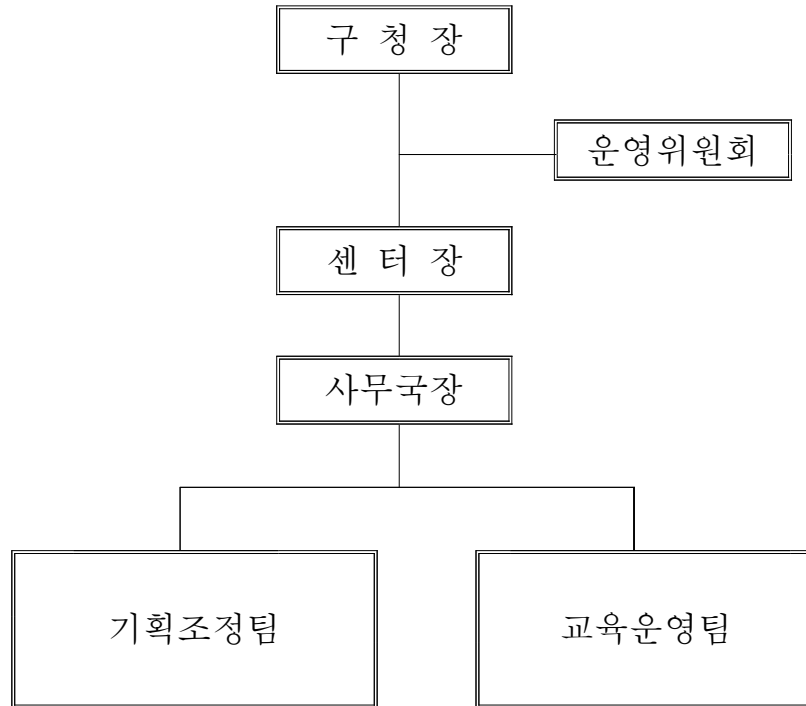
제21조제3항 중 “센터 장이하며”를 “센터장이 하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센터의 조직체계 (제3조의2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센터의 기구)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센터의 기구는 센터장, 운영위원회, <u>2개 팀을 두며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u></p> <p><u>1. 센터장 : 1명</u></p> <p><u>2. 운영위원회 : 20명 이하(당연직 운영위원 포함)</u></p> <p><u>3. 기획조정팀 : 팀장 1명, 운영요원 3명</u></p> <p><u>4. 교육홍보팀 : 팀장 1명, 운영요원 2명</u></p>	<p>제3조(센터의 기구) ----- ----- ----- ----- <u>1국 2</u> <u>팀을 둔다.</u> <u>&lt;삭 제&gt;</u> <u>&lt;삭 제&gt;</u> <u>&lt;삭 제&gt;</u> <u>&lt;삭 제&gt;</u></p>
<p>제3조의2(조직체계) <u>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u></p>	<p>제3조의2(조직체계) <u>조직체계</u>----- -----.</p>
<p>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팀장, 서기는 <u>교육홍보팀장</u>이 된다.</p>	<p>제10조(간사) ----- ----- ----- <u>교육운영</u> <u>팀장</u>-----.</p>
<p>제1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은 「<u>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u>」를 준용하여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등) ----- ----- ----- 「<u>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u> <u>조례</u>」----- <u>범위</u>-----.</p>
<p>제13조(회계관리) ① ~ ③ (생략)</p>	<p>제13조(회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p>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생략)

② 센터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예산) ① 센터장은 다음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된 예산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확보된 구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8조(직원의 임용 등) ① ~ ④ (생략)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예산) ① ----- 다음 연도 -----

-----  
-----  
-----  
-----.

② -----  
- 다음 연도 -----  
-----  
-----.

③ -----  
--- 다음 연도 -----  
-----  
-----.

제16조(결산) -----

-----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직원의 임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략)

⑤ 직원임용의 선발 자격은 별표 2 과 같다.

제18조의2(승진임용) 상위 직급에 결  
원 발생 시 별표 2에서 정한 직원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직원 중에서 운  
영위원회의 심의와 구청장의 승인  
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시 1  
호봉을 감한다. 단, 사업실적 및 근  
무평정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공개채  
용으로 한다.

제21조(공인) ①·② (생 략)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 장이하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행과 같음)

⑤ ----- 별표 2  
와 -----.

제18조의2(승진임용) -----  
-----  
----- 인사  
위원회-----  
-----  
-----.

제21조(공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센터장이 하며 --  
-----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146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공약사항의 추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약사항 관리체계(안 제4조)
  -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하며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지정, 체계적인 추진·관리를 담당.
- 공약사업 확정 (안 제5조)
  - 법률적 검토, 사업의 적정성, 실천 가능성 등 검토 후 확정

## ○ 실천계획 수립(안 제6조)

- 공약사항의 취지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 정확한 현황 분석, 예상되는 문제점, ,재원조달 대책 등을 고려하여 수립

## ○ 실천계획 변경(안 제7조)

-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의 협의 후 실시

## ○ 추진상황 점검(안 제8조)

- 분기별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 실시

## ○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및 임기 등(안 제9조 ~ 제12조)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영 :20명 이내
- 임기 : 구청장의 재임기간

## ○ 평가방법 및 결과 등(안 제13조)

- 연1회 실시, 추가 실시 가능

##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1913,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 1. 제안이유

-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공약사항의 추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약사항 관리체계(안 제4조)
  -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하며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지정, 체계적인 추진·관리를 담당.
- 공약사업 확정 (안 제5조)
  - 법률적 검토, 사업의 적정성, 실천 가능성 등 검토 후 확정
- 실천계획 수립(안 제6조)
  - 공약사항의 취지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 정확한 현황 분석, 예상되는 문제점, ,재원조달 대책 등을 고려하여 수립
- 실천계획 변경(안 제7조)
  -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의 협의 후 실시
- 추진상황 점검(안 제8조)
  - 분기별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 실시
-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및 임기 등(안 제9조 ~ 제12조)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영 :20명 이내

- 임기 : 구청장의 재임기간
- 평가방법 및 결과 등(안 제13조)
  - 연1회 실시, 추가 실시 가능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를 기획예산실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

서와 관련부서(이하 “주관부서 등”이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 등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공약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약사항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자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5조에 따른 공약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천계획을 세워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사항 취지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4.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자원조달 대책 마련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
    - 조정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 등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리카드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 등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추진이 부족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⑤ 평가단원은 제3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민, 사회단체원, 대학교수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평가단의 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를 총괄한다.

-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촉의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①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변경 및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약사항 검토 결과

공약사항																																											
공약내용 (요 약)																																											
검토 결과																																											
관련현황																																											
추진계획 (잠 정)																																											
사업소요액 (단위: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0%;">계</th> <th style="width: 10%;">국비</th> <th style="width: 10%;">시비</th> <th style="width: 10%;">구비</th> <th style="width: 10%;">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년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년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년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임기 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추진상문제점 및 대안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임기내 가능 <input type="checkbox"/> 장기 추진 <input type="checkbox"/> 추진 불가																																										
주관부서 (관련부서)	부서명 :                      팀명 :                      담당자(전화) :																																										

[별지 제2호서식]

## 공약사항 실천계획

관리번호		공약명						
------	--	-----	--	--	--	--	--	--

담당부서		담 당	(☎ )	담당자	(☎ )
관련부서		담 당	(☎ )	담당자	(☎ )

사업성격		사업주체			완료시기		재원조달방안				소요예산
신규	계속	국가	시	구	임기 내	임기 후	자체	보조	기타	비예산	

사업목표

○

개 요

○

연도별 실천계획

연 도	실천계획	추진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향후추진계획

○

기대효과

○

[별지 제3호서식]

## 공약사항 관리카드

<b>관리 번호</b>		<b>공약명</b>	
------------------	--	------------	--

주관부서		담당	(☎ )	담당자	(☎ )
관련부서		담당	(☎ )	담당자	(☎ )

추진사항						소요예산	이행단계	추진율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부진	미착수	기타			

사업개요

○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

연 도	이행률	달성을	연도별 추진사항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4년차	%	%	
임기 후	%	%	

※ 이행률 : 공약사항 전체기준 추진성과 (민선7기 동안의 성과)

※ 달성을 : 해당 연도별 당초계획 대비 추진성과 (해당 연도 성과)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그동안 추진사항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 추진계획

○